

자산보관위탁 변경계약서

주식회사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前.주식회사 투게더한라시그마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하 “갑”)와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을”)간 2020년 11월 26일 체결한 자산보관위탁계약(이하 “원계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산보관 위탁 변경계약(이하 “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전 문

“갑”과 “을”은 원계약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용어의 정의]

원계약에서 정의된 용어는 본 변경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문맥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변경계약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2조 [변경내용]

원계약 제21조 제2항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제21조 (보수) ② 보수는 매 결산기 단위로 결산 주주총회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 결산기마다 1,000만원(연간 2,000만원, VAT별도)을 현금 지급한다. 당해 결산기 “을”의 자산 보관 업무 수행 기간이 6개월에 미달할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180일을 기준으로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 (보수) ② 보수는 매 결산기 단위로 결산 주주총회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 결산기마다 1,000만원(연간 2,000만원, VAT별도)을 현금 지급한다. 단, 제7결산기부터 청산등기일까지의 보수 8,055,556원(VAT 별도)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당해 결산기 “을”의 자산 보관 업무 수행 기간이 6개월에 미달할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180일을 기준으로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원계약과의 관계]

본 계약은 원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원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본 계약의 내용과 원계약의 내용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은 다음 페이지지에]



“갑”과 “을”은 본 변경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4년 4월 26일

“갑”

주식회사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802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청산인 김 동 기



“을”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대표이사 정 영 채

(인)

